

인터넷상 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황 창 근**

Contents

- I. 서론
 - II. 인터넷상 분쟁의 해결제도의 특성
 - III. 분쟁해결제도로서 정보차단 등의 임시조치
 - IV. 개인적 법익 분쟁에 대한 인터넷심의제도
 - V.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 VI. 정보게재자의 정보제공 청구제도
 - VII. 결론
-

* 이 논문은 2017. 8. 25.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학회·유럽헌법학회 공동 주최 '2017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자료를 발표 이후 수정한 것임.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서론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등 인터넷상 발생하는 분쟁이 기존의 분쟁과 비교하여 2차적 피해로 확대되고,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해결방법도 달리 고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쟁해결의 특수성이 논의된다.

전통적으로 분쟁의 해결은 사회공동체의 자율적인 것으로부터, 정치적 공동체의 강제적인 것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고, 전자가 도덕, 윤리 등에 터잡은 것이라면, 후자는 국가의 법을 토대로 한 것으로 발전되어 왔다. 법은 수범자에 대한 강제적인 복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자율적인 준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보통, 인터넷공간은 역사적으로 기존의 국가와 달리 자율적인 공간, 해방공간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어 분쟁해결제도가 전통적인 법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인터넷의 속성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사정에서,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인 재판제도 보다는 자율적인 분쟁해결제도가 훨씬 더 인터넷친화적인 것이라는 인식도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상 분쟁에 대하여 기존의 분쟁해결제도인 법원에 의한 소송절차, 각종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및 저작권법에 도입된 임시조치제도(notice and take-out)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인터넷상의 분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입법례가 보이지 않으나 인터넷상 인격권 관련 분쟁이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각국의 인터넷환경과 현저한 질적, 양적 상이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상 인격권 분쟁에 관한 특별하고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를 강구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무엇이고, 당사자가 누구이며, 특히 인터넷세상에서 가해자, 피해자, 인터넷사업자 즉 포털사업자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여야 할 것인가가 인터넷 분쟁 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분쟁은 일반적으로 개인간에 발생된

것을 주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회적·국가적인 것은 분쟁이라고 하기 보다는 ‘위법’ 또는 ‘불법’의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개인간에 발생한 분쟁을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법의 존재이유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분쟁 또는 분쟁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분쟁의 예방과 해결이 주요 목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입법의 목적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와 같은 분쟁의 예방 또는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논문은 그런 관점에서 제반 인터넷정책이나 제도에 관련된 법률을 분쟁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전제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를 어떻게 개선하여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 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이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는 점 등을 사후적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II. 인터넷상 분쟁의 해결제도의 특성

인터넷상 분쟁의 특징을 보면, 첫째 피해 확산의 신속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터넷 분쟁이 발생하면 최종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불법성의 가능성이 높다면 임시적으로라도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쟁을 정치적 논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과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었던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내용 규제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컴퓨터와 인터넷이 가지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분쟁 유발 행위를 제어하는데 중대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정보 유통의 시간적, 공간적 무제약으로 인한 분쟁의 상시적 발생을 들 수 있다.¹⁾

다음으로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을 보면, 피해의 신속한 확산으로 인한 2차적

1) 이상 내용은 황창근, 김경석, 황민경,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분쟁에 있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2011, 17-19면.

피해의 발생 및 영구적 유통의 특징을 가지는 인터넷상 분쟁에 대하여는 재판제도와 같은 기존 방식으로는 이를 만족시키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은 점이 요청된다. 첫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아니하면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점(분쟁해결의 신속성의 요청), 둘째 인터넷상의 정보의 유통은 정보의 게재자와 피해자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3자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이 세 당사자가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점(분쟁해결의 자주성의 요청), 셋째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권한을 가진 기관은 우리나라의 헌법 하에서는 사법부라는 점에서 인터넷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쟁해결은 최종적일 수 없고 임시적이라는 점(분쟁해결의 임시성의 요청)이 그것이다.²⁾

Ⅲ. 분쟁해결제도로서 정보차단 등의 임시조치

1. 제도의 의의와 현황

(1) 임시조치제도의 의의

임시조치제도란 권리침해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는 규제제도를 말하는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는 ‘정보의 삭제요청 등’이라는 제목 하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제103조에서 ‘복제·전송의 중단’이라는 제목으로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조문 제목은 ‘정보의 삭제요청 등’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정보삭제 요청에 따른 조치 중에서 정보의 삭제는 침해사실이 명백한

2) 이상 내용은 황창근, 김경석, 황민경, 위 연구보고서, 41-42면 참조.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임시적인 접근차단조치”로 시행되는 만큼 이를 ‘임시조치’라고 통칭하고 있다. 또한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타인의 권리’라는 목적을 감안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소정의 ‘불법 정보’에 대응하여 소위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모든 권리침해정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의 인격권에 국한하여 해석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재산권의 침해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상의 임시조치를 이용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³⁾ 다만 최근 실무상으로는 소비자의 게시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제기한 임시조치를 수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2) 처리 현황

포털3사(네이버, 다음, 네이버)의 임시조치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22만 건에서부터 2014년부터는 연 40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⁴⁾ 임시조치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임시조치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연 40만 건 이상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로 해결을 하고 있는 사정은 놀라운 일이다. 한편 「2016 사법연감」의 통계를 보면 2015년 전체 소송사건이 630여만 건이고, 그 중 민사사건이 440만 건인 점을 보면 임시조치제도로 분쟁이 해결되는 성과를 간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⁵⁾

2. 제도의 입법 연혁과 이 제도의 본질 문제

임시조치제도는 1998년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 제정되고, 우

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제1항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이에 준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만을 의미할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12.12.4. 자 2010마817 결정).

4) 해럴드경제, “인터넷 ‘악플’ 남발...포털 ‘임시조치’ 올 50만건 사상최대”, 2016.12.16. 보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216000379>).

5) 2016년 사법연감.

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상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삭제의무와 관련하여 여러 판례가 나타나자 실무적으로 먼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최초 법제도는 2001. 1. 16.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의 삭제요청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을 제외하고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정보에 대하여 “notice and take-down” 법리를 도입한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입법에 해당된다. 이 조문은 2007년 대폭적인 수정을 거치는데, 당시 오늘날의 임시조치의 골격을 만들게 된다. 2001년 제도와 오늘날 제도를 비교하여 보면(아래 <표> 참조), 과연 두 제도가 동일한 입법목적으로 구성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001년 삭제요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정보로서 포괄적, 광범위한 것이었는데 2007년 개정시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2001년 도입시 제도는 게시물 삭제를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2007년 개정후 현재의 제도는 접근차단 조치로 변형되었으며, 2007년 개정시에 정보게재자에 대한 통지 및 이용자 공시제도가 도입되는 등 절차가 보강되었다.

<표> 임시조치의 입법경과

2001. 1. 16. 개정법률	2007. 1. 26. 개정법률	비교
제44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제목 동일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 대상 정보의 축소 조정 - '법률상 이익'에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로 축소 ○ 요청요건으로서 '소명'요건 추가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 필요한 조치에 임시조치 명시함 ○ 정보게재자에 대한 통지절차 및 이용자에 대한 공시 등 추가

인터넷상 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다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 <신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신설> 임시조치기간 등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설> 약관 명시 조항
	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신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감면조항

이를 단순한 체계상의 문제로 볼 것인지⁶⁾ 아니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입법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것인지 의문이 없지 않다. 이는 임시조치의 본질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임시조치는 사적 분쟁해결의 기능,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체계 성격,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법적 성격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⁷⁾ 이 제도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가 어렵지만, 정보통신망법 제1조와의 관계에서 고찰할 때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은 충족하지만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은 저해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있다.⁸⁾ 이처럼 표현의 자유의 침해 문제는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며 헌법재판에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이 제도가 인터넷 분쟁의 해결제도로서 수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남용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⁹⁾

첫째,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상 정보에 대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의한 종국적인 판결 이전에 임시적이고, 중간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ADR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둘째,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에 대한 인터넷심의체계와 함께 국가의 인터넷에 대한 내용규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인데, 법률이 정하고 있는 임시조치는 국가의 내용규제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규제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내용규제의 입법목적은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명예훼손정보(제44조의7제1항제2호)와 같은 인격권 정보에 대한 내용규제는 사인 간의 분쟁에 국가가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내용규제를 통한 간접적 분쟁 해결구조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임시조치제도는 후술하는 권리침해형 인터넷심의제도, 명예훼손분쟁조정 제도와 비교할 때 처리건수나 증가추이 등을 볼 때 사회에서 중요한 분쟁해결제도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6) 심우민, “임시조치 합원결정의 입법학적 검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1권 제2호, 2014.3, 218면.

7) 황창근 전계논문, 259-263면.

8) 심우민, 전계논문, 229면.

9) 심우민, 전계논문, 230면.

<표> 임시조치와 유사제도의 비교(출처 : 심우민)

구분	임시조치		권리침해 통신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	
	건수	지수	건수	지수	건수	지수
2008년	91,947	100.00	6,334	100.00	57	100.00
2009년	134,408	146.18	3,990	62.99	48	84.21
2010년	143,759	156.35	1,926	30.41	51	89.47
2011년	209,510	227.86	2,833	44.73	59	103.51
2012년	214,285	233.05	2,947	46.53	69	121.05

* 주: 지수는 각 제도의 2008년 건수를 기준(100)으로 하여 변환한 것임

3.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정보통신방법을 중심으로)

임시조치제도는 신속한 피해구제의 목적을 달성과 정보게재자의 이익 내지 이용자의 이익의 침해라는 상반된 이익의 충돌이라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되는 현상이 되고 있는데,¹¹⁾ 특히 이 제도를 분쟁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간의 관계 재정립

임시조치에 있어서 주요 당사자는 정보게재자, 권리침해 주장자(피해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터넷사업자)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자(또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에 따라 임시조치 등을 하고 이를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게재자는 위와 같은 임시조치 사실을 통지받고 있다.

10) 비판적인 입장은 이 제도가 인터넷상 게시물을 손쉽게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도 지적한다. 심우민, 전제논문, 223면.

11)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보법학」 제13권 제3호, 2009, 256면.

현행법상 정보게재자는 임시조치 과정에서 이의를 제출하는 등의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고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후술함). 다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면, 제2항에서는 “인터넷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라고 규정하는 반면, 제4항에서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치를 분리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의 해석에 의하면 접근차단조치가 예외적인 사항이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요청과 조치라는 기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무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제2항과 제4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시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면제 유무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임시조치의 요청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의 내용

신청인은 해당정보에 대하여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을 하여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임시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 제2항, 제4항). 현행법에 의하면 신청인의 신청사항은 제1항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조치는 제2항과 제4항에 구분되어 있는데, 양자는 서로 대응하여 동일하게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요청사항에 삭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삭제보다는 차단이나 임시조치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행법은 침해사실이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명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실질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처리케 하기 위한 것임을 볼 때 피해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본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¹²⁾ 헌법재판소는 앞서 본 임시조치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한 임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침해 주장자의 ‘소명’이 요구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영리적 목적과 사인의 사생활, 명예, 기타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 사이에서 해당 침해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판시하여 소명을 증명의 정도로 이해하는 듯한 태도로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자로부터 삭제 등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제2항제1문),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제4항, 이하 접근차단조치라고 함)로 규정되어 있다. 양자의 관계에서 후자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삭제 및 반박사실의 게재’(제2항)는 임시조치가 아닌 최종적인 조치에 해당되고,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제4항)만을 임시조치로 보고 있는 것이므로 후자의 조치를 원칙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 제4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임시적 차단조치만을 이 제도의 조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¹³⁾

(3) 정보게재자의 재개신청 등 당사자의 불복절차의 보장 문제

현행법은 저작권법과 달리 임시조치 이후 정보게재자의 재개요구, 재개요구에 대한 피해주장자의 이의 등 불복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정보게재자는 불측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 실무는 저작권법의 규정 예에 따라 정보게재자의 재개신청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법률 개정안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재개절차 내지 이의제도를 두지 않는 것은 입법의 오류라고 할 것이다.

12) 황창근, 전계논문, 266면.

13) 황창근, 전계논문, 270-272면.

(4) 임시조치의 기간과 기간 경과후의 조치 사항

현행법에 의하면 임시조치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제4항제2문), 이 기간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정도면 분쟁이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는 정도로 이해된다.

임시조치기간인 30일 이후에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임시 조치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의 견해가 가능하다. 삭제설은 임시조치기간이 지나도록 정보제공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해당 정보의 권리침해성이 사실상 인정이 된다고 보고 영구 삭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이고, 재개설은 임시조치기간이 경과하도록 양 당사자의 법적 절차가 없다면 이는 더 이상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임시조치제도가 삭제가 아닌 접근 차단이라는 임시조치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각 포털사업자가 재개(네이버) 또는 삭제(카카오) 등 자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의하면 이의제기시에는 직권조정절차로 자동 이행되는데 직권조정절차의 종료시까지 임시조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유승희의원안은 이의제기시 해당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피해자의 책임의 문제

임시조치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문제는 1) 임시조치와 관련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2) 임시조치를 남용한 피해자의 책임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임시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하여 보면, 임시 조치를 시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이를 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한다는 입법주의와 법상 근거는 있지만 이를 재량적으로 선택한 이상 임의적인 감면으로 충분하는 입법주의로 나눌 수 있다. 현행법은 임의적 감면입장을 보이고 있다(제44조의2

제6항). 저작권법은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03조제6항)라고 규정하여 필요적 면제를 취하고 있다. 입법론으로 필요적 면제가 분쟁해결 목적의 임시조치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실제로도 법률상 근거를 가진 임시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조치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¹⁴⁾ 법상의 근거 및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조치등을 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를 요청함으로써 이 제도를 남용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물론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도의 주의적 규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6) 임의의 임시조치의 허용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¹⁵⁾ 임의의 임시조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제도가 타당한지 문제가 된다. 이는 권리주장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 임시조치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¹⁶⁾ 제44조의3 및 약관을 근거로 하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긍정설), 인터넷사업자에게 피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삭제의무를 지우는 것은 일반적인 상시검열의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인터넷의 특성에 부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부정설), 특별한 사정 즉

14) 같은 취지의 판결로 피고가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 제4항에 의한 적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1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6) “인터넷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사업자가 명백히 권리침해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삭제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절충설)가 대립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판시¹⁷⁾하고 있어 위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검열의 조장, 조치의 불가능성, 당사자 간의 사적분쟁의 특수성 등과 같은 이유로 임의적 임시조치는 타당하지 않다.¹⁸⁾ 첫째, 인터넷사업자가 당사자의 요청 없이 임의로 정보의 삭제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사업자가 항시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내용통제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둘째, 이 문제는 헌법적으로 私인에 의한 검열의 문제 즉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의 문제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권리침해정보는 사인간에 권리의 침해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서, 제3자로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권리침해정보인지 여부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넷째, 피해자의 삭제 등 요청이 있으면 임시 조치를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다는 구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임시조치의 활성화를 통한 권리침해 규제체계를 확고히 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¹⁹⁾ 현재 임의적 임시조치를 실무적으로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제출된 개정안 2개는 임의의 임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타당한 방향이 아니다.

17)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18) 다만 우리나라 사정에서 포털사이트와 같이 회원이 아니면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는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정보유통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사이트의 약관에서 그 책임과 의무에 따른 이견 임의의 임시조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9) 기타 사항으로, 제44조의2제3항 소정의 청소년보호 조항 문제는 임시조치와 하등 관계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임시조치에 대한 합헌결정의 의의

임시조치에 대하여는 2012년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논란이 가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²¹⁾ 임시조치에 대한 위헌논란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결과를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도 상당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사법부의 판결로 인하여 어떤 경우는 사회적 논란이 잠재워지기도 하였으나, 또 어떤 경우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²²⁾ 임시조치의 경우는 현재의 결정이 사회적 논란을 잠재

20) 현재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결정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침해 주장자의 삭제요청과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절하다.

‘사생활’이란 이를 공개하는 것 자체로 침해가 발생하고, ‘명예’ 역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침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게재되는 사생활이나 명예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가 적지 않고,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인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로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인격 파괴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정보의 공개 그 자체를 잠정적으로 차단하는 것 외에 반박내용의 게재, 링크 또는 퍼나르기 금지, 검색기능 차단 등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한 임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침해 주장자의 ‘소명’이 요구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려는 영리적 목적과 사인의 사생활, 명예, 기타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 사이에서 해당 침해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30일 이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정보 접근만을 차단할 뿐이라는 점, 임시조치 후 ‘30일 이내’에 정보게재자의 재게시청구가 있을 경우라도 임시조치기간이 종료한 경우 등 향후의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정보의 불법성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권리침해 주장자와 정보게재자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의 절차적 요건과 내용 역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표현의 자유가 갖는 구체적 한계로까지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헌법 제21조제4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만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됨으로써 타인의 인격적 법익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공익은 매우 절실한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정보게재자의 사익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21)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결정(현재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결정)과 각하결정(현재 2011. 11. 24. 2010헌바353 결정)을 내렸고, 현재도 현재에서 심판 중에 있다(2016헌마275 ; 2016헌마606).

22) 사법부 판결의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는, 이론적 가설로 긍정적 반응가설(판결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격상시킴)과 구조적 반응 가설(판결 선고 후에도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우지도 못하고 있는 ‘구조적 반응가설’ 내지 ‘계약적 법원모델’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여전히 임시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위에서 본 입법론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5. 20대 국회 제출 개정안에 대한 평가

(1) 정부제출안에 대한 검토(2016. 6. 29.발의, 의안번호 546)

첫째,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던 현실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하던 불복절차를 입법화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의 법적 효과를 임시조치기간의 연장으로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본질에서 본다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주장자에게 추가적인 조치의무(이를테면 소의 제기)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의 불이익으로 하여 결국 정보의 재개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걸 개정안에서는 이의제기를 분쟁조정신청으로 의제함으로써, 이를 자동적인 추가적인 조치의무(소의 제기와 같은)로 보아 정보의 재개가 아닌 현재의 임시조치의 유지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의제기와 조정신청의 의제를 결부하면 타당한 결론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의제기시에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분쟁조정절차로 회부토록 하였다. 이의제기를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의제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가. 기술한 바와 같이 이의제기에는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라는 취지 이외에 해당 정보에 대한 권리침해여부를 본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정보게재자의 요청이 있는 것이므로, 권리주장자로서는 추가적인 소의 제기 등

공존), 역동적 법원모델(판결을 선고하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남)과 계약적 법원 모델(법원은 상당한 제약을 야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재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9. 153-247면 참조할 것.

을 통한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증거가 요청된다. 그런데 임시조치가 잠정적이고 중간적인 분쟁해결수단인 점에서 해당 정보의 권리침해성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절차 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 임시조치 절차 내에서는 기계적·형식적인 판단만에 의하여 해당 절차의 진행여부만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국 핵심적인 사안인 해당 정보의 권리침해성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 등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 DMCA나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같이 법원에 소를 제기 하는 것이 가장 종국적인 결정이 될 것이지만,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만큼 이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처리능력의 한계를 감안하여 조직을 강화한 것은 타당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권리주장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 하거나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임시조치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저작권법이나 미국 DMCA에서는 정보게재자의 재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권리주장자의 소제기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재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도 이의제기를 분쟁조정 신청으로 의제하고 있는 만큼 분쟁조정절차만큼이나 혹은 훨씬 더 종국적인 법원의 판결이나 기소 등을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정보에 대하여 권리주장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임시조치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추가 입법 요청 사항).

(2) 유승희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2016. 8. 9. 발의, 의안번호 1469)

첫째,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절차를 도입한 점은 앞서 본 정부안과 유사한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유승희의원안은 임시조치제도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OSP에게 매년 2회 임시조치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있다(안 제8항). 그러나, 이 제도는 자율적인 분쟁해결 기능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굳이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만일 보고의무의 신설과 동시에 의무위반시 제재를 도입하지 아니하면 보고제도가 형해화될 것이므로 의무이행 강제수단 도입시에는 자율적인 제도에서 '타율적인 제도'로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소결

임시조치에 대하여는 인터넷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라는 평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궁극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표현의 자유의 침해 요소를 제거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의 개선방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제도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의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시적인 조치'로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영구적인 삭제보다는 잠정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로 구성하고, 제도의 이행과정 중에 소송이나 조정 등의 공적인 처리를 병행케 하여 임시조치가 종국적인 조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인터넷상 분쟁해결 제도의 중간단계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Ⅳ. 개인적 법익 분쟁에 대한 인터넷심의제도

1. 의의와 법적 성격

인터넷심의제도는 인터넷상 불법정보, 청소년유해정보 또는 불건전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 등을 통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법적 절차를 일컫는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인터넷심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법익을 기준으로 하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당사자간의 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제도는 사실상 분쟁해결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인터넷심의제도는 행정청에 의한 내용규제의 본질을 가지는데, 사적분쟁의 영역에 국가행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흔한 사례가 아니다. 분쟁의 해결은 행정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정보를 심의한 결과 불법정보에 해당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를 하고, 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44조의7제2항). 이 명령이 행정행위로서 제재처분에 해당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시정요구의 처분성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로 처리하는 실무 예가 있었으나 이후 판결²³⁾과 현재 결정에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입법적으로도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각호 중 개인 간 분쟁에 대한 심의절차는 행정권이 직접적으로 간여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실상 '사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집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인터넷상 분쟁 이외에 일반적인 개인간의 분쟁에 대하여 행정권이 간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임이 틀림없다. 일부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그 경우는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ADR의 일종인 조정이나 재정, 중재의 성격을 띠는 것인만큼, 이러한 인터넷심의에서의 권력적 작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 장차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래에서는 개인간 분쟁에 대한 심의시에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최근 판결이 입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3)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0누9428 판결 (확정); 현재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결정.

2. 개인 간 분쟁에 대한 심의구조의 문제점²⁴⁾

(1) 서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각호의 불법정보²⁵⁾ 중에는 개인간의 분쟁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2호, 3호, 4호, 6의2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개인 간의 분쟁에 있어서 국가공권력을 통한 규제체계 내에서 피해자인 개인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에 대한 제한명령을 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대응하여 행정법상 ‘반의사불처분조항’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24) 황창근, “ 명예훼손정보의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유승희의원 명예훼손 심의규정 관련 토론회 자료집(2015. 7. 20) 참조.

25) <불법정보의 종류>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 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教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 당사자의 의사의 반영 시점의 문제

사적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분쟁의 특성상 당연한 것인데, 예컨대 형사처벌에서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형식으로, 민사구제절차에서도 당사자의 소의 제기라는 형식을 통하고 있다. 행정처분에서도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명예훼손사실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므로 그것이 형사처분인지, 민사소송인지, 행정처분인지 그 법적 절차에 따라 달리 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 형법이 명예훼손에 대하여 범죄로 받아들임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반의사불벌절차를 도입한 것인데, 이 취지는 판결시의 요청이 아니라 수사개시시의 요청으로 해석하는 것이 명예훼손사항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이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판례가 일부 있다).

문제는 피해자의 의사를 행정청의 처분시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심의개시 시점부터 반영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심의개시 시에 당사자인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심의요청을 받아들이거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심의요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 즉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심의개시는 자세히 보면 제3자의 요청이나 풍문, 보도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 만큼 결국 제3자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가 개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법률 조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함)에서는 2014년 개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심의 개시시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반드시 요하도록 개정을 하였다.²⁶⁾ 이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심의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정보통신방법의 규정이 처분시에만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면 충분하다는 해석으로

26)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2014.1.19.자 개정)

제10조(심의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1~4.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심의개시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5. 12. 10. 심의규정 개정에서 위 개시요건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²⁷⁾ 그러나 이러한 개정논리는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할 것이다. 처분시에 당사자의 의사만을 확인토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없다.²⁸⁾ 더욱이 행정심의회에 있어서 피해자인 당사자는 심의를 원하지 않는데, 제3자가 나서서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와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 적어도 마지막 처분단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 심의 중에 다시 피해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심의규정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입법론

첫째, 현행 심의규정의 태도는 사적분쟁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취지를 몰각하고 아주 형식적인 법리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의규정을 구 심의규정과 같이, 심의개시요건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것이 필요하다(심의규정의 재개정).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 간의 분쟁사항에 대한 인터넷심의회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반영 구조를 기존의 반의사불처분 방식이 아니라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친고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여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한 국가행정권이 간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심의회에서 처분의 종류는 해당정보의 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이므로, 명예훼손정보의 유통을 직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피해를 구제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상 청구에 따른 구제방식과 유사하므로 당사

27) 제10조(심의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이용자 등이 위원회에 불법·청소년유해정보로 신고한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이 규정의 위반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 <2015.12.10>

28) 과연 심의규정 개정 이후에 피해자의 심의요청이 없는 경우 즉 제3자의 요청이나 직권등으로 심의를 개시한 사례가 몇 건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만일 그런 사례가 없다면 동 심의규정의 개정이 무용한 것이 될 것이다.

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2항 단서를 “개정(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반의사불처분이 아니라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의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친고죄의 방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조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시정요구’에는 적용이 없어 어차피 법적용의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소결

위와 같이 현행 법률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반영을 단순하게 처분시에 반영토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축소해석한 하위 심의규정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심의규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법률 자체를 반의사처분방식에서 친고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심의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판결과 입법의 변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처분성에 대하여, 기존의 실무관행인 시정 권고적 성격을 부인하고 당사자를 구속하는 처분성이 있음을 법원(서울고법 2012. 5. 3. 선고 2010누9428 판결, 확정)과 헌법재판소(헌재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결정)가 선고하였다. 시정요구의 처분성을 인정하게 되면, 권리구제 절차에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상 소송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절차에서는 행정절차법의 처분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절차준수의 의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시정요구의 근거법률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동 개정내용을 보면, 시정요구를 할 경우 의견진술 기회에 대한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였으며(제25조제2항),²⁹⁾ 시정요구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불복절차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29)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

(동조 제6항)³⁰⁾. 즉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의 대상적격 규정을 입법으로 반영하여 더 이상 시정요구의 처분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제거한 의미가 있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이 사회적 영향 특히 입법에 영향을 미친 드문 사례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판례법 국가도 아니고, 특히 이 사건판례가 대법원도 아닌 고등법원의 판결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대응입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이 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의 하나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의 위헌성에 대한 결정인데, 그 결정의 방문으로 시정요구의 처분성을 논의한 결과일 뿐이다. 사실 이 사건에서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행정재판권 여부와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법원의 판단보다 중시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어떤 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의 변경이 입법으로 반영된 사례에 해당된다.

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30) ㉞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V.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1. 의의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제1항제4호, 제44조의10). 이는 행정형 분쟁조정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조정의 대상이 되는 권리침해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등 모든 개인적 법익 침해행위를 포함한다. 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된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조정의 결과는 해당 정보 삭제, 손해배상, 공개사과 등의 내용을 가지게 된다.

2. 문제점과 최근 개정안의 내용

2016년 통계를 보면 2016년 총 1684건 중 상담, 질의가 596건, 정보제공결정 304건을 제외하면 300여건이 분쟁조정사건인 것으로 보이며 그 중 단 31건만이 조정전 합의 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능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표> 2016년 인터넷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처리 현황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위 : 건)

구분	계	접수 처리								상담, 질의 등
		조정전 합의	조정 결정	정보 제공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기타	진행중	
2016.1.1.~12.31.	1,684	19	14	304	610	51	24	10	56	596

그 원인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길게 규정된 처리기간(60일), 조정의 효력(민사상 합의), 강제조사 과정의 부재, 조정전 합의와 조정결정의 실질적인 차이의 부재 등이 제기되지만, 무엇보다도 조직구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상임위원이 1인도 없으며 전체위원의 숫자도 매우 적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조정부의 조직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부개정안(2016. 6. 29.발의, 의안번호 546)은 현재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골자를 보면 기존의 인터넷 명예훼손조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조직을 대규모로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는 점이다. 즉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하고,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의 정비는 앞서 본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계시자의 이의신청시 자동으로 분쟁조정에 회부토록 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제도개선을 취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ADR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점은 타당한 입법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VI. 정보계시자의 정보제공 청구제도

특정한 이용자의 정보의 게재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민·형사소송 제기를 위하여 정보계시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청구하면(동조 제1항),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해당 정보계시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고(동조 제2항),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22조의6 제3항). 이에 따라 정보게재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피해자는 민·형사상의 소송 제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법 제44조의6제3항). 이 제도는 인터넷상 피해를 당한 자라도 그 정보게재자의 신원을 알 수 없으면 민형사상 소송 등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이 제도는 2007. 1. 26. 정보통신망법 개정시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당시 같이 도입되었던 게시판 본인확인제와 짝을 이루어 게시판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2006년 통계에 의하면 304건의 정보제공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한 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¹⁾

그런데, 이 제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정보게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누출이나 표현의 위축 등의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은 정보제공 청구절차를 법정하고, 그 사용목적은 민·형사상 소송제기로 제한하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가 인터넷상 분쟁해결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실효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제도는 정보게재자의 신원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현재와 같이 회원 가입시 또는 정보게재시 실명 확인을 강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본인확인제가 시행되지 않은 웹사이트라고 한다면 정보제공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게재자의 신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둘째, 정보제공의 결정주체 측면에서 보면, 현행법에서는 행정기관에 불과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권이 사적 분쟁의 해결 즉 실질적인 사법작용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 권력분립주의의 관점에서

3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업무처리 현황(2016. 1. 1. - 2016. 12. 31.)
(http://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Communion_View.php?ko_board=info_Communion&a_id=11316&page=1).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침해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위반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제101조).³²⁾

VII. 결론

인터넷상 분쟁은 기존의 분쟁과 달리,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한 2차 피해의 발생, 영구적 피해 등의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기존의 분쟁해결방식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여기에 특유한 분쟁해결방식이 고안되고, 또 기존의 제도도 활용되고 있는데, 과연 제도가 목적에 걸맞는 구조를 가지고 실천되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제도에 대한 평가를 문제점 중심으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다음으로 관련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입법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몇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분쟁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정보제공청구제도,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임시조치제도는 불법정보에 대한 인터넷심의제도와 더불어 국가내용규제체계의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재 연 50만 건의 게시물이 임시조치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인터넷매체의 특유한 분쟁해결방법인 점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현재의 기능을 전제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밝힌다. 즉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의제기절차의 완비, 신청요건의 제한 등을 통하여

32)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김성근(2010), “독일, 저작권법 위반시의 정보공개청구권”,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제2010-5호, 한국인터넷진흥원, 59-60면 참조.

게시물 분쟁의 합리적 처리와 함께 표현이 자유 보장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개인적 법익에 관련된 인터넷심의제도는 내용규제체계를 떠나 일정 부분 분쟁해결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 중 피해자인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법상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정보와 같은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절차에서도 인터넷심의라는 행정규제체계에 당사자의 신청을 필요요건으로 규정하여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러 사정상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지는 못하였지만, 사법부의 재판결과가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몇 개의 사례를 들어 시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참고문헌

- 김성곤, “독일, 저작권법 위반시의 정보공개청구권”,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제2010-5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 심우민, “임시조치 합헌결정의 입법학적 검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1권 제2호.
- 이제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9.
- 황창근·김경석·황민경,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 분쟁에 있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연구보고서, 2011.
-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보법학 제13권 제3호, 2009.
- 황창근, “명예훼손정보의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유승희의원 명예훼손 심의규정 관련 토론회 자료집, 2015. 7. 20.
- 헤럴드경제, “인터넷 ‘악플’ 남발…포털 ‘임시조치’ 올 50만건 사상최대”, 2016.12.16. 보도(<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21600037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업무처리 현황(2016. 1. 1. - 2016. 12. 31.) (http://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Communication_View.php?ko_board=info_Communication&ba_id=11316&page=1).
- 대법원, 2016년 사법연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인터넷상 분쟁의 해결제도라는 주제를 공통으로 하여 현행 제도를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시도하였다. 단일의 제도도 아니고, 입법목적 자체가 분쟁 해결제도로 규정된 것도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인터넷상 분쟁해결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모두 ‘인터넷상 분쟁해결제도’로 보고 그 입법적 평가, 사법부 재판을 통한 입법적 변화 등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룬 인터넷상 분쟁해결제도로는 임시조치, 개인적 법익에 대한 불법정보 심의제도,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정보제공청구제도 등이다.

임시조치는 그 본질이 국가 내용규제체계의 하나이지만, 이 제도를 통하여 정보게시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OSP가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ADR에 속한다. 자주적이고, 임시적이며 중간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중국적인 재판과는 구별되지만, 매년 50여만 건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점을 보면 분쟁해결제도로서의 기능을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게시자 또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현재 수행되는 기능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정보게시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잘 보장할 수있을지 하는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능한 한 국가의 관여를 배제하고, 대상 게시물을 한정하며, 피해자를 제한하며, 정보게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법평가의 한 방식으로, 사법부의 재판결과가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인터넷상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몇 개의 사례를 통하여 시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주제어

정보통신망법, 분쟁해결제도, 임시조치, 내용규제, 인터넷심의

Abstract

Legislative Evaluation of resolution systems on the Internet dispute

Hwang, Chang-Geun*

This paper tried to solve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on the Internet in terms of legislative evaluation. It is not a single system and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tself is not defined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However, considering that it performs some dispute resolution function on the internet, it is regarded as 'Internet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a legislative changes through judicial judgments.

The Internet dispute resolution system covered in this paper includes Temporary Blinds, internet deliberation on personal legal interests, defamation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information request system. The Temporary Blinds is part of the ADR in that OSP resolves disputes between the publisher and the victim through the system, although the essence of the provision is one of the national content regulat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ignore the func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ultimate trial in that it is an independent, temporary, and intermediate measure, but the fact that about 500,000 measures are taken every year. Therefore, from the viewpoin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publisher or the user, it is necessary to attain a practical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how to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of information publisher etc. It is best to improve as much as possible by excluding the involvement of the state, limiting objects and victims, and ensuring the rights of publishers of information. Finally, the way in which legislative judgments affect the legislative process in a way of legislative evaluation is investigated through several case studies focusing on the internet dispute resolution system.

* Professor, Hongik University

Key Words

Information Communication Law, dispute resolution system, Temporary Blinds, content regulation, internet deliberation